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2.12.27.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 및 투자규모를 규정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조건과 절차를 정함.
(안 제11조의5내지 제11조의12)

또한 투자진흥지구내의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지역내 시범·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율을 규정(안 제31조의22)하여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을 규정(안 제11조의5 신설)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을 신설(안 제11조의6내지

제11조의10 신설)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조건 및 사유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사업 및 감면율을 규정(안 제31조의 2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6. ~ 5. 16.) 및 관계부처 협의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조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제11조의13으로 하고,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의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1조 또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통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지역
2.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인·허가 등을 받은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등) ① 투자자는 새만금청장에게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은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영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여부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3.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새만금청장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수립) ①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주요 사업내용, 개발 또는 관리 방법 및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5제2항의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통보)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한 때에는 투자진흥지구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전라북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만금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의6제1항 및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주요사항의 중대한 변경

제11조의10(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실행 여부를 반기마다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6부터 제11조의10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11(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3.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12(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해제)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전라북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4. 지정해제 사유

제31조의22를 제31조의23으로 하고, 제3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등)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면제. 다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등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며, 점용·사용료 면제 등의 기간은 점용·사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2.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시범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 100분의 50 감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적용 투자기준(제11조의5 관련)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엔지니어링사업

다. 전기통신업

라.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너.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5(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 ① 법제11조의5 제1항의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u> <u>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u> <u>1. 법 제11조 또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통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지역</u> <u>2.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인·허가 등을 받은 지역</u> <u>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u> <u>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
<u><신 설></u>	<u>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등) ① 투자자는 새만금청장</u>

에게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은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영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여부를 투자진흥구구의 지정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3.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새만금청장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신 설>

<신 설>

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수립) ①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주요 사업내용, 개발 또는 관리 방법 및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5제2항의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지정통보)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한 때에는 투자진흥지구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

<신 설>

장·관세청장·전라북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법 제11조
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만금청장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에 관
하여는 제11조의6제1항 및 제3
항·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새
만금청장은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해당 투자진
흥지구의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
여야 한다.

④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 면적의 100분
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신 설>

관리방법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주요사항의 중대한 변경

제11조의10(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실행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6부터 제11조의10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11(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기준)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제11조의5 (생략)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3.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12(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해제)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4. 지정해제 사유

제11조의13 (현행 제11조의5와 같

<신 설>

제31조의22 (생 략)

음)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등) 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면제. 다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등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며, 점용·사용료 면제 등의 기간은 점용·사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2.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시범사업 또는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 100분의 50 감면

제31조의23 (현행 제31조의22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87